

의안번호	2210092
의 퇴 인	이소영 의원
회 답 일	2025. 5. 13.
추계번호	25E253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고배당성향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
분리과세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
1	안 제14조제3항 제5의2호 신설 (과세표준의 계산)	○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, 고배당성향 상장법인* 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도록 함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배당성향이 35% 이상인 주권상장법인			
2	안 제129조 (원천징수세율)	○ 고배당성향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신설			
		<배당소득 구간별 원천징수세율>			
			2천만원 이하	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	3억원 초과
		원천징수세율	14%	20%	25%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4조제3항 제5의2호 신설(과세표준의 계산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9조 (원천징수세율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은 배당성향¹⁾이 35%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에 따를 경우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
1) 일반적으로 배당성향은 '한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중 지급된 현금배당액 비중'을 의미함

- 현행은 개인의 이자·배당소득 합산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분리과세)하고 있으며,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
- 개정안은 고배당성향 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원천징수되도록 하는 내용으로, 이에 따르면 이자·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적용받는 세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

□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구간별로 향후 개인이 고배당성향 상장법인에서 받는 배당소득 규모를 전망해야 함

- 그러나 배당성향이 35% 이상인 고배당성향 주권상장법인이 향후 지급할 배당금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하며, 배당소득 구간별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- 참고로 2022~2024년 기준, 배당성향 35%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수와 비중은 다음과 같음

[표 1] 배당성향 35% 이상 주권상장법인 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개)

		2022	2023	2024
코스피	전체 상장사	821	821	821
	배당성향 35% 이상	130	140	155
	(비중)	(15.8%)	(17.1%)	(18.9%)
코스닥	전체 상장사	1,792	1,792	1,792
	배당성향 35% 이상	121	129	153
	(비중)	(6.8%)	(7.2%)	(8.5%)
코넥스	전체 상장사	120	120	120
	배당성향 35% 이상	1	1	0
	(비중)	(0.8%)	(0.8%)	(0.0%)

자료: 한국거래소, 상장공시시스템(KIND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수입 감소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이정훈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669	nororand@assembly.go.kr